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66

제출년월일 : 2008.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안산어촌민속전시관의 박물관 등록에 따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며, 자문위원회의 설치, 유물수집의 기준·방법 및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 조례 제명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의 운영 조례”로 하고, 안산어촌민속전시관을 안산어촌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 나. 박물관 등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2장).

- 박물관 등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개관 및 휴관·관람시간·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전시 및 소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제3장).

- 전시 및 소장유물의 수집방법·수집절차·유물의 대여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물의 수집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4장).

- 박물관 등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 주요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기능·위원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마. 박물관 등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5장).

- 박물관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11,000천원**

- 유물구입비 : 10,000천원
- 유물구입 감정평가위원 수당 : 1,000천원

**사건예고**

- 입법예고 : 2008. 2. 19. - 2008. 3. 5.(15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1부(2008.03.04.)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 추진방침 결정문(2008. 1. 9.)
- 박물관 등록증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1의 5필지(선감동) 일원에 두며 누에섬등대전망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70번지(누에섬) 일원에 둔다.

## 제2장 박물관 등 운영

**제3조(사업)** 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이하 “박물관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등의 유지·관리
2. 어촌의 전통 민속 및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간행물 제작·배포
3. 박물관 등의 소장품 보관·보존 및 전시
4. 어촌문화와 서해안 생태, 등대 등에 관한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등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09 : 00 ~ 18 : 00
  2. 매표시간 : 09 : 00 ~ 17 : 30(다만, 조석시간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 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 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
- ④ 시장은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유족 1명 포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단체관람의 인솔을 하는 사람(20명당 2명 이하로 한정)
6. 박물관 등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2. 진열품 등을 만지는 행위
3. 박물관 등의 내에서 흡연·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변상 및 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유물의 수집) 유물의 수집대상 및 범위는 어촌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1조**(유물의 구입 등)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입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감정 평가를 거쳐 구입 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

**제12조**(유물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2명 이상의 위원이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대여)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박물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전시하는 경우
3. 유물을 박물관 등에 기증 또는 관리전환을 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유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물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3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2. 유물대여에 따른 반출과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유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의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안산시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등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등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어촌민속·역사·해양생태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민간이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보칙

**제21조(위탁 관리·운영)** 시장은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박물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실·과		생명산업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담당·팀장 직위·성명	연안관리담당 조연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홍지선 (행정 2335)

[별표]

박물관 등 관람 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등대전망대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2,000	1,500	1,000	700
청소년· 군인	1,500	1,000	700	500
어린이	1,000	700	500	300

주) 1. 개인

가. 어른 : 20세~64세

나. 청소년 : 14세~19세(중·고등학생)

다. 어린이 : 7세~13세(초등학생)

※ 6세이하, 65세이상 무료

2.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할 경우를 말함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66
----------	------

제안년월일 : 2008. 3. 28.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유물의 구입시 공인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격 결정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삭제함.

## 2. 주요 골자

-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함.  
(안 제11조제2항)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장 “박물관 등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안산시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산시 박물관 등”을 삭제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u>제2장 박물관 등 운영</u></p> <p>제11조(유물의 구입 등) ① (생략)            ② <u>매입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감정 평가를 거쳐 구입 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u></p> <p><u>제4장 안산시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u></p> <p>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안산시 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2장 운영</u></p> <p>제11조(유물의 구입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u>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u></p> <p><u>제4장 운영자문위원회</u></p> <p>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p> <p>.....</p> <p>&lt;삭 제&gt;.....</p> <p>.....</p>